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1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청구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1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12. 2 선고 2021가소107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 2022. 10. 27.

판결 선고 2022. 12. 15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12. 2. 선고 2021가소107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

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)과 물품을 거래하면서 2018. 3. 28.부터 2019. 3. 8.까지 피고 회사 대표자의 요청으로 그 모친인 피고 C의 계좌(D조합(계좌번호 1 생략))로 16,5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나.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107133호),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 계좌로 미지급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,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법원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9,500,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,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 이에 원고는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.

다. 따라서 피고들은 16,500,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중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가. 민법 제741조는 "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"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

등 참조).

나.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, 피고 회사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개당 500원의 수수료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을 제3, 4,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 회사 측에, 하루산소 75g을 개당 1,500원으로 하고 피고 회사의 수수료는 5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, 대금은 2,500원이고 산소한그루 300개, 하루 산소 500개 40만 원(= 500원 × 800개 금액이다)은 D조합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, 원고는 동일한 기간에 피고 회사의 통장 및 피고 C의 계좌에 돈을 나누어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와 같은 사실들은 원고가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피고 회사의 계좌 및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.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물품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영호

판사이경선

판사김리사